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채현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발의자 : 채현일 · 한병도 · 이해식
이재강 · 이광희 · 이상식
조승래 · 장철민 · 양부남
신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,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.

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,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0조의4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선거교육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교사 등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0조의4(선거교육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사 등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</p>